감사 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총 13건의 통보·시정 조치

구 분	신분상 조치 (건/명)				행정상 조치 (건)						
	소계	징계	경고	주의	소계	통보	개선	기관경고	기관주의	시정	권고
13건 / 3명	3 / 3	– / –	2 / 2	1 / 1	10	5	1	1	–	3 (1,886,240)	–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일련번호	조치기관	처분사항	제 목
1	동해청(기획운영과) 강릉서(기획운영과)	**통보, 개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방법 개선 필요
2	강릉서(기획운영과)	**통보, 경고**(1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3	강릉서(기획운영과)	**통보, 시정**	월 임차료 지원금 지급 절차 부적정
4	강릉서(기획운영과, 경비구조과, 해양안전방제과)	**통보, 시정**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5	강릉서(기획운영과)	**통보**	우편요금 납부 업무처리 부적정
6	강릉서(기획운영과, 경비구조과)	**기관경고, 시정,** **경고**(1명), **주의**(1명)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미흡

2. 주요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 : 6건

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방법 개선 필요(통보 · 개선)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기준[1]」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운용부서 및 경리계에서는 계좌가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문 제 점)** 기획운영계에서는 '25. 3. 31. 개서 이후 '26. 6. 9. 맞춤형복지 계좌를 개설하기 전까지 '임차료(임대보증금)' 목적으로 개설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계좌에 맞춤형 복지비 관련 출납목적으로 혼용하여 사용

- 경리계에서는 '25년 총 3회(2~4분기) 이상 관서명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의 정기점검을 하였으나, '임차료' 계좌에 '맞춤형 복지비'를 혼용하여 출금관리대장과 실제 거래내역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 못 함

-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수입) 결의서"의 서식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마다 각각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출납서류 편철 방법, 결재, 편철 부서 등 관서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 방식 상이

➡ **(조치사항)**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운영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등 자체 관리 방안 마련**(통보)**

- 동해청 기획운영과장은 동해청 및 소속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련 대장 일제 정비 대책 마련**(통보)**

- 소속 해양경찰서 회계부서의 지급서류 서식 및 편철기준의 표준화 검토, 개선될 수 있도록 본청 건의**(개선)**

2)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통보·경고)

○ **(판단기준)**

가.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미이행

---

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8893('25.5.12., "해양경찰청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기준 하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에서는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등 업무지침[2]」을 마련, 재무관 기준 연간 5회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도입

나. 계약서류 작성 미흡

- 「국가계약법」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및 계약금액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며, 「계산증명규칙」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지출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함

다. 계약체결을 위한 시중가격 조사업무 소홀

- 「국가계약법」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 2024년 해양경찰청 주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감사 결과[3]에 따라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에서는 예산 절감 및 투명한 계약 업무 이행을 위해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장가격을 조사하도록 업무지침[4] 하달

○ **(문 제 점)**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 공사업체 주식회사 □□□씨(□□C, 강원도 춘천시 소재)에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임시청사 집기류(냉난방기) 구매계약 등 총 7건(80,418,6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 서면계약 총 59건 중 57건의 계약서류에 계약관 직인이 아닌 계약담당공무원 개인 도장 날인, 그중 53건의 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여 원본은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고 메일, 팩스 등으로 사본을 받아 편철하는 등 증거서류

---

2)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19894('25.11.3.,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등 특정업체 집중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알림”)
3)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5347(2024. 12. 4.,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감사 결과 알림”)
4)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3401(2025. 2. 24., “계약업무 관련 업무지침 하달”)

원본주의 미준수

-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의뢰 시 제출한 계획금액과 계약부서에서 최종 계약한 금액이 동일한 5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이 총 68건으로, 계약담당자가 별도의 시장가격 조사 없이 사업부서 의뢰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업무 소홀

➡ (조치사항) 강릉해양경찰서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 등 자체 관리방안 마련(**통보**)

- 관련자 A(**경고**)

3) 월 임차료 지원금 지급 절차 부적정(통보·시정)

○ **(판단기준)** 「국고금 관리법」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지출금의 반납기한)에 따라 사용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문 제 점)** 2025년 직원숙소운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1명의 대상 인원에게 매월 20만원의 임차지원금을 지급하던 중, 12월 임차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면서,

- 임차료 불용예산액을 규정에 따라 반납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 계획금액인 20만원이 아닌, 불용예산액을 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 분할하여 추가 지급

➡ (조치사항) 강릉해양경찰서장은 담당자 회계 관련 교육 등 재발 방지 방안 마련(**통보**)

- 12월 임차료 지급기준액 초과 지급금액(750,000원) 환수 조치(**시정**)

4)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통보·시정)

○ **(판단기준)**

가. 국내여비 과소·과다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하고,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되고,

- 근무지 내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며, 실비 지급 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의 경우 운임으로 한정, 지급하도록 규정

나. 교육훈련 여비와 출장여비 중복집행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따라 교육대상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다. 워크숍 등 전일 출장 여비 산정 부적정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등에 따라,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 해당 공무 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는 등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

○ **(문 제 점)** 출장 여비 지급 시 개인별 정산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 최종 산정된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었고, 담당자의 정산오류로 2025년 12월 추가 지급, 2026년 반납 등 추가 집행 반복

- 근무지가 강릉파출소(강릉시)이고 출장지가 구조대 사무실(강릉시)로 동일시 안에서의 출장에 대하여 근무지외 출장여비를 지급(개인별 250,000원→ 근무지내 여비 정산시 100,000원)
- 강릉해양경찰서에서 강릉우체국까지 거리가 편도 193m, 왕복 2km 이내로 운임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체송여비 지급(도보, 21회, 105,000원)
- 교육훈련 여비 지급 건, 수색구조에서 출장여비 중복 지급
- 출장자의 편의를 위해 전일 출장지로 이동하여 숙박, 다음날 워크숍 일정을

수행한 출장자에게 이동일에 대한 일비, 실비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근무지가 아닌 체재지에서 출장지까지 이동한 출장자에게 교통비 과다 지급

➡ **(조치사항)**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여비 관련 규정 교육 및 대책방안 마련**(통보)**

- 국내여비 부적정 지급금액 시정조치**(시정)**

5) 우편요금 납부 업무처리 부적정[통보]

○ **(판단기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의 기준을 준수하여 배정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각 비목별 지침은 아래와 같음

일반수용비(210-01목)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우편송금 수수료등), 기타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 구입의 대가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철도화물 운송요금, 오물수거료 등),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 **(문 제 점)** 우편요금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집행하지 않고,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잘못 집행하고 있었고,

- 강릉우체국과 우편요금 후납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우편물 발송 시마다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고, 요금후납우편물 수령증과 우체국 우편요금 결제 영수증만 보관하여 당시 발신 부서, 수신처, 내용물 등 확인 불가

➡ **(조치사항)** 강릉해양경찰서 우편요금 납부 업무처리 시 납부방법 변경, 우편물 발송대장 작성 등 효율적인 우편요금 납부 업무처리 방안 마련**(통보)**

6)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미흡[기관경고 · 시정 및 경고 · 주의]

○ **(판단기준)**「국고금 관리법」,「계산증명규칙」및「해양경찰청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기준[5]」과「해양경찰청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6]」등에 따라 각 관서 출납공무원은 지침을 준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규정에 따라 편철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

5)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3834('25. 2. 27., "2025년 해양경찰청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기준「알림」")
6)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413('26. 1. 23., "2026년도 해양경찰청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알림」")

○ **(문 제 점)** [표-4]와 같이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의 편철이 부적정하였고,

[표-4] 강릉해양경찰서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 편철 부적정 현황

연번	출납부서	증거서류 편철 부적정 세부내역
1	▽▽▽▽과	◦ 여비 지급 관련 증거서류 미비 ◦ ◎◎◎◎◎◎◎ 교육비 동일인 중복지급 및 증빙서류 편철 누락 ◦ 특정업무경비 지급 시 지급 계획(증거서류, 개인별 지급 내역서 등) 누락 등
2	◆◆◆◆과 △△△△과	◦ 검사·검수관 지정 부적정, 검사·검수 누락 등 검사·검수 업무 미흡
3	전 출납부서	◦ 계획 및 결과 공문, 예산집행 관련 증거서류 편철 누락 ◦ 편철 순서·방향 부적정 ◦ 현장부서 적요란 미기재, 검사·검수 누락 등

자료: 강릉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특정업무경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사발령 시 전입자와 전출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정기 인사발령일('26. 2. 23.) 기준 월액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26. 4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면서 현재 근무자 대상(전출자 제외)으로 분할 지급하여 다음 [표-5]와 같이 개인별 특정업무경비를 과다·과소 지급

[표-5] 2026년 1분기 ▽▽▽▽과 특정업무경비(◎◎◎◎◎) 지급현황

연번	직책	계급	성명	지급금액	정당지급액	과부족금액	비고
1	▽▽▽▽과장	경○	■■■	8,000	9,190	-1,190	
2	▽▽▽▽계장	경○	◎◎◎	8,000	9,190	-1,190	
3	▽▽▽▽계원	경○	☆☆☆	8,000	9,190	-1,190	
4	▽▽▽▽계원	경○	◆◆◆	8,000	3,240	+4,760	'26.2.23.전입
5	▽▽▽▽계원	경○	♧♧♧	8,000	3,240	+4,760	'26.2.23.전입
6	▽▽▽▽계원	경○	♠♠♠	-	5,950	-5,950	'26.2.23.전출

자료: 강릉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강릉해양경찰서장은 회계관계부서 주관 지도점검 시 단순 지적이 아닌, 맞춤형 교육실시, 관련 규정 배포 등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노력하는 등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철저**(기관경고)**

- 특정업무경비 과부족금액 시정 조치**(시정)**

- 관련자 B**(주의)**, 관련자 C**(경고)**